

항목	세부내용	결과
1.기관 요건	1-1.소속근로자 및 협력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인지 ※ 위탁훈련, 구직자, 채용예정자훈련은 지원 불가 - 전체훈련인원 중 우선지원기업 근로자가 20% 이상	
	1-2.훈련지원을 위한 조직이 실재하는지 - 전담조직(조직도, 업무분장표), 전담자 인터뷰로 확인 - 출결관리 방안(출장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등)	
2.고숙련, 신기술 해당여부	2-1.고숙련 또는 신기술에 해당하는 훈련인지 - 고숙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대외비로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제출 없이 열람으로 갈음) - 신기술인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확인 - 훈련제외분야가 아닌지 확인(인터뷰)	
3.훈련 시설, 장비, 교보재 등	3-1.신청서에 나와 있는 시설과 동일여부 등 확인 - 소유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 측정 -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기간, 임차금액) 확인	
	3-2.훈련에 필요한 장비 확인 - 장비의 사양(모델명), 수량, 작동상태 등 확인 - 단, 장비가 다양할 경우에는 주된 장비 위주로 확인	
	3-3.훈련에 필요한 교재, 교보재 확인 - 교보재 수량, 상태를 확인하고 리스트를 심사위원회 제출 - 교재의 수량,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인터뷰	
4.기타 요건구비	4-1.훈련과정 설계 - 훈련목표 수립 및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였는지(기간, 참여자, 추진 동기 등) - 기업 전체적인 훈련 체계가 있는지와 있다면 해당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훈련이 기존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신청과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4-2.교강사 관련 - 교강사 위촉 기준, 외부강사나 사내강사 활용 기준 - 사내강사를 활용한다면 사내강사 양성을 위한 기관 노력	
	4-3.예산편성 관련 - 지원불가 항목 포함 또는 단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 단순 계산 착오나 오탈자 여부 - 임차료, 장비 감가상각 계산에 필요한 기초 자료	
	4-4. 기타 증빙확인 - 대외비 등으로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에 대한 열람 - 기타 증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확인	

□ 기본요건

지표	심사기준	결과
신청주체	소속 근로자 및 협력관계(계열사 포함)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훈련이 맞는지, 우선지원대상 근로자가 전체 20%에 해당하는지	
고속연 훈련	<NCS과정> 5수준 이상(40% 이상 적용)	
	<비NCS과정> 자체기준 제시	
훈련시간	<우선지원대상 기업> 8시간 이상	
	<대규모 기업> 16시간 이상	
실습시간	과정 당 전체훈련시간 중 30%이상 편성	
훈련제외분야 포함여부	일반사무행정(컴퓨터활용, 리더십, 고객만족, 영업관리 등)을 위한 훈련	
	제품의 단순한 생산 또는 장비 운영에 대한 훈련	
	법령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훈련	
	자격(학력)취득 또는 이와 유사한 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 제외 대상	
훈련비	과정당 NCS직종별 표준훈련비 300% 이내	

※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란에 부적격이라 표시

※ 한 가지 항목이라도 부적합할 경우 기본요건 불비로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 훈련적정성

지표	배점	심사기준		결과
기관역량 (5점)	5	훈련 지원을 위한 조직 역량 구비		
		5	전담조직 및 전담자 있음	
		3	전담조직 없고, 전담자 있음	
		1	전담조직 및 전담자 없음	
훈련인프라 (15점)	5	강의실(실습장) 활용 적정성		
		5	교과목에 적합한 강의실과 실습장 등을 자체보유하고 훈련에 활용	
		3	교과목에 적합한 강의실과 실습장 임대하여 훈련에 활용(우선지원대상 기업)	
		1	교과목에 적합한 강의실과 실습장 임대하여 훈련에 활용(대규모 기업)	
	5	훈련장비(기자재) 보유 적정성		
		5	교과목내용에 적합한 훈련장비(기자재) 자체보유하고 훈련에 활용	
		3	교과목내용에 적합한 훈련장비(기자재) 임대하여 활용(우선지원대상 기업)	
		1	교과목내용에 적합한 훈련장비(기자재) 임대하여 활용(대규모 기업)	
	5	훈련교보재(교재) 보유 적정성		
		5	자체개발한 교보재(교재)사용	
		3	일부자체개발, 일부시중출판사 교재사용	
		1	시중출판사 교재사용	

지표	배점	심사기준		결과
훈련과정 설계 (30점)	15	훈련목표와 교과목편성의 적정성		
		15	훈련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교과목편성	
		10	훈련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교과목편성	
		5	훈련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교과목편성	
	5	훈련목표와 훈련시간의 적정성		
		5	훈련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훈련시간편성	
		3	훈련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훈련시간편성	
		1	훈련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훈련시간편성	
	5	실험, 실습비중		
		5	훈련시간 중 60% 이상 편성	
		4	훈련시간 중 50% 이상 편성	
		3	훈련시간 중 50% 미만 편성	
	5	NCS 수준		
		5	NCS 7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4	NCS 6수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3		NCS 5수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교강사 우수성 (5점)	5	교강사 전문성		
		5	교과목 내용에 매우 적합한 교강사를 활용	
		3	교과목당 최소 필요 교강사 2배 이상 확보	
		1	교과목당 최소 필요 교강사 확보	
훈련인원 및 훈련생 선발 (10점)	5	훈련생 선발계획 및 기준의 적정성		
		5	기준이 명확하고 모집계획의 실현가능성 높음	
		3	기준은 명확하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 보통수준	
		1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5	훈련 과정 당 훈련인원의 적정성		
		5	과정 당 20명 이하	
		4	과정 당 20명이상 30명 이하	
		3	과정 당 30명이상 40명 이하	
		2	과정 당 40명이상 50명 이하	
		1	과정 당 50명이상	

지표	배점	심사기준	결과	
과정운영 적정성 (25점)	5	1일 훈련시간의 적정성		
		5	1일 평균 6시간 이내 편성	
		3	1일 평균 8시간 이내 편성	
		1	1일 평균 8시간 초과 편성	
	5	세부지도목표, 지도내용, 교수학습방법의 적정성		
		5	지도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교수계획 수립	
		3	지도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교수계획 수립	
		1	지도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교수계획 수립	
	5	실습훈련의 적정성		
		5	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한 실습훈련계획 제시	
		3	목표 달성에 적합한 실습훈련계획 제시	
		1	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실습훈련계획 제시	
	5	훈련성과 평가방법의 적정성		
		5	지도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평가방법 제시	
		3	지도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평가방법 제시	
		1	지도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교수계획 제시	
	5	훈련생 출결관리 적정성		
		5	계획이 구체적이고, 교육담당자가 출결관리	
		3	계획이 구체적이고, 교강사가 출결관리	
1		출결관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훈련과정 지원필요성 (10점)	10	생산현장 공정개선을 위한 직무기술 중심 숙련도 향상 훈련과정		
	8	생산현장 품질향상을 위한 숙련도 향상 훈련과정(유사과정 포함)		
	6	제품의 진단/수리를 위한 숙련도 향상 훈련과정(유사과정 포함)		
	4	기업의 전체적인 숙련도 향상 훈련과정 등		

□ 기본요건

지표	심사기준	결과
신청주체	소속 근로자 및 협력관계(계열사 포함)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훈련이 맞는지, 우선지원대상 근로자가 전체 20%에 해당하는지	
신기술 훈련	<신기술, 신제품> 인증이 유효한지	
	<4차산업 선도인력> 8개 분야에 해당하는지	
훈련분야 기본요건	<신기술, 신제품> 기술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훈련인지	
	<4차산업 선도인력> 8개 분야 기술 습득, 활용, 제품의 생산, 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훈련인지	
훈련시간	<우선지원대상 기업> 8시간 이상	
	<대규모 기업> 16시간 이상	
실습시간	과정 당 전체훈련시간 중 30%이상 편성	
훈련제외분야 포함여부	일반사무행정(컴퓨터활용, 리더십, 고객만족, 영업관리 등)을 위한 훈련	
	제품의 단순한 생산 또는 장비 운영에 대한 훈련	
	법령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훈련	
	자격(학력)취득 또는 이와 유사한 훈련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 제외 대상	
훈련비	과정당 NCS직종별 표준훈련비 300% 이내	

※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란에 부적격이라 표시

※ 한 가지 항목이라도 부적합할 경우 기본요건 불비로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 훈련적정성

지표	배점	심사기준		결과
기관역량 (5점)	5	훈련 지원을 위한 조직 역량 구비		
		5	전담조직 및 전담자 있음	
		3	전담조직 없고, 전담자 있음	
		1	전담조직 및 전담자 없음	
훈련인프라 (15점)	5	강의실(실습장) 활용 적정성		
		5	교과목에 적합한 강의실과 실습장 등을 자체보유하고 훈련에 활용	
		3	교과목에 적합한 강의실과 실습장 임대하여 훈련에 활용(우선지원대상 기업)	
		1	교과목에 적합한 강의실과 실습장 임대하여 훈련에 활용(대규모 기업)	
	5	훈련장비(기자재) 보유 적정성		
		5	교과목내용에 적합한 훈련장비(기자재) 자체보유하고 훈련에 활용	
		3	교과목내용에 적합한 훈련장비(기자재) 임대하여 활용(우선지원대상 기업)	
		1	교과목내용에 적합한 훈련장비(기자재) 임대하여 활용(대규모 기업)	
	5	훈련교보재(교재) 보유 적정성		
		5	자체개발한 교보재(교재)사용	
		3	일부자체개발, 일부시중출판사 교재사용	
		1	시중출판사 교재사용	

지표	배점	심사기준		결과
훈련과정 설계 (30점)	15	훈련목표와 교과목편성의 적정성		
		15	훈련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교과목편성	
		10	훈련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교과목편성	
		5	훈련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교과목편성	
	5	훈련목표와 훈련시간의 적정성		
		5	훈련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훈련시간편성	
		3	훈련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훈련시간편성	
		1	훈련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훈련시간편성	
	5	실험, 실습비중		
		5	훈련시간 중 60% 이상 편성	
		4	훈련시간 중 50% 이상 편성	
		3	훈련시간 중 50% 미만 편성	
	5	신기술, 신제품 유효기간		
		5	최초 인증을 받은 지 1년 이내	
		4	최초 인증을 받은 지 2년 이내	
3		최초 인증을 받은 지 3년 이내 또는 4차 산업 8개 분야 해당하는 경우		
교강사 우수성 (5점)	5	교강사 전문성		
		5	교과목당 최소 필요 교강사 2배 이상 확보	
		3	교과목 내용에 매우 적합한 교강사를 확보	
		1	교과목당 최소 필요한 교강사만 확보	
훈련인원 및 훈련생 선발 (10점)	5	훈련생 선발계획 및 기준의 적정성		
		5	기준이 명확하고 모집계획의 실현가능성 높음	
		3	기준은 명확하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 보통수준	
		1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5	훈련 과정 당 훈련인원의 적정성		
		5	과정 당 20명 이하	
		4	과정 당 20명이상 30명 이하	
		3	과정 당 30명이상 40명 이하	
		2	과정 당 40명이상 50명 이하	
		1	과정 당 50명이상	

지표	배점	심사기준	결과	
과정운영 적정성 (25점)	5	1일 훈련시간의 적정성		
		5	1일 평균 6시간 이내 편성	
		3	1일 평균 8시간 이내 편성	
		1	1일 평균 8시간 초과 편성	
	5	세부지도목표, 지도내용, 교수학습방법의 적정성		
		5	지도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교수계획 수립	
		3	지도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교수계획 수립	
		1	지도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교수계획 수립	
	5	실습훈련의 적정성		
		5	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한 실습훈련계획 제시	
		3	목표 달성에 적합한 실습훈련계획 제시	
		1	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실습훈련계획 제시	
	5	훈련성과 평가방법의 적정성		
		5	지도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게 평가방법 제시	
		3	지도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평가방법 제시	
		1	지도목표 달성에 일부 미흡하게 교수계획 제시	
	5	훈련생 출결관리 적정성		
		5	계획이 구체적이고, 직원이 출결관리	
		3	계획이 구체적이고, 교강사가 출결관리	
1		출결관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훈련과정 지원필요성 (10점)	10	새로운 제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기술 습득(활용) 훈련과정		
	8	생산현장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 습득(활용) 훈련과정(유사과정 포함)		
	6	제품의 진단/수리를 위한 신기술 습득(활용) 훈련과정(유사과정 포함)		
	4	신기술 습득(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훈련과정 등		

□ 지원기준

-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하나, NCS직 종별 기준단가의 300%를 초과할 수 없음(기업 규모별 차등 없음)

※ 실비가 아닌 직종별 기준단가(100%)로 신청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산출내역 및 증빙 자료 제출 불필요

- (강사료) 내부와 외부 강사 모두에게 지급 가능하나 내부 강사의 경우에는 외부 강사 등급별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되, 시간당 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필요한 경우 정원이 20명을 초과한 과정은 보조강사(C등급 이하) 1인을 둘 수 있음

[강사등급별 시간당 강사료 상한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이하
외부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7만원
내부	7만원			5만원	3.5만원

- (교재) 교재 구입 및 인쇄는 훈련시간과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인쇄비는 정해진 단가(1페이지 당 컬러 200원, 흑백 100원)로 지원

- (실습비) 실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재료 및 훈련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공구 등 기재

- (시설, 장비, 교보재) 자가로 보유 중인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한 감가상각 금액만 지원하며, 임차의 경우에는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훈련에 대한 지원이므로 자산 취득의 성격을 갖는 장비나 교보재 등의 구입은 불가하며, 임차의 경우에도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과 반드시 필요한 준비·정리 시간까지 인정

- (간접비용) 훈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은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문구비와 간식비 등을 기재

	지급기준
문구류	1인 3,000원(1회만 제공) 한도
간식비	1일 1인 3,000원 한도, 1일 평균훈련 시간이 4시간 초과 시

□ 항목별 세부지원 기준

항목	1. 강사료
----	--------

심사기준 <강사료>	내부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등급에 따라 외부 강사료의 50%를 한도로 지급하되, 시간당 강사료는 7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내부 강사료 지급 기준이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p>[증빙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사별 등급 확인용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졸업장 등) ② 내부강사료 지급규정
	외부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내부 별도의 외부 강사료 지급 기준이 더 낮은 경우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p>[증빙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사별 등급 확인용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졸업장 등) ② 외부 강사료 지급규정
	보조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인을 초과하는 과정의 경우 1인을 둘 수 있으며 C등급 이하의 금액을 지급(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

항목	2. 교재비
----	--------

심사기준 <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되, 훈련에 필요한 주교재에 대한 구입비용 <훈련인원*주교재 구입단가> <p>[증빙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적서(교재구입 단가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발생비용을 근거로 산정하되, 훈련에 필요한 주/부교재 등에 대한 제작 및 인쇄비용 <훈련인원*쪽당 인쇄비용*쪽수> - (참고) 컬러 200원, 흑백 100원 <p>[증빙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적서(쪽당 인쇄비용 및 쪽수 명시)
---------------	---

항목	3. 실습비
----	--------

심사기준 <실습비>	<p>○ 실습재료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로 하되, 일반적인 사무용품 및 문구비용은 제외 - 단, 불필요한 고가품이나 과대 책정된 재료비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자산 성격의 품목은 불인정 <p>[증빙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습재료비 산출내역서 ② 견적서
---------------	--

항목	4. 시설비
----	--------

심사기준 <시설비>	<p>○ 시설임차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강의장 임대료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나 1일 한도 40만원 이내 지원. 단, 과정 특성상 최첨단 설비나 고가의 장비 활용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초과 가능 -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훈련 면적과 훈련시간에 활용하는 것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40만원 이내로 제한 <p style="text-align: center;"><임차금액 = $\frac{\text{월 임차료} \times \text{해당 시설에서 훈련시간}}{160\text{시간}}$></p> <p>[증빙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 최첨단 설비나 고가의 장비활용으로 신청금액이 4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나 장비 증빙자료 추가 <p>○ 시설감가상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유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감가상각비 <p style="text-align: center;"><취득금액/360*훈련월수*훈련시설면적/총 시설면적> 또는 <해당시설 감정가액/360*훈련월수*훈련시설면적/총 시설면적></p> <p>[증빙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훈련시설의 취득금액(또는 감정금액)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최근감정가액)
---------------	---

항목	5. 장비비
----	--------

심사기준 <장비비>	장비 임차비 및 소프트 웨어 사용료	<p>○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임차 및 관리비용(단, 범용성 장비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사용갯수(횟수)*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훈련인원></p> <p>○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함(단,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사용갯수(횟수)*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훈련인원></p> <p>[증빙파일] ① 임대계약서(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서) 또는 견적서</p>
	장비 감가 상각비	<p>○ 장비감가상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비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취득일로부터의 기간이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주장비로서,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감가상각비. 단, 주장비는 NCS훈련기준 또는 일반훈련기준에서 정한 것에 한함 - 구입 및 임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관에서 구비되어 있는 주 훈련장비만 인정 <취득가액/60*장비사용일수/30> <p>○ 소프트웨어 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한하여 최소금액으로 지원함(단, 범용성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외) <사용료*사용갯수(횟수)*사용기간> 또는 <월사용료/160*훈련시간> 또는 <인당 사용료*훈련인원> <p>[증빙파일] ① 주장비 취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② 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서 또는 견적서</p>

항목	6. 기타 훈련비용
----	------------

심사기준 <기타훈련비용>	<p>○ 기타훈련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에 필요한 비용으로 훈련기관이 산정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가능 - 문구비는 1회에 한하여 1인당 3천원 지원(1회만 지급) - 다과비는 1일 1인당 3천원 지원 <p>[증빙파일] ① 기타훈련비용 산정 내역 및 입증서류</p>
------------------	---

등급별 강사비 지원 한도액 및 자격 기준표

등급	S급	A급	B급	C급
한도액 (시간당)	25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자 격	차관급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 (기업체 사장) 이상	책임연구원급 (연구위원)이상	선임연구원급 (부연구위원)이상	선임연구원급 (원급)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정교수급 이상	부교수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9년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4년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23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8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3년 이상	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8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25년(27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20년(22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5년(17년) 이상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동일분야 경력 10년(12년) 이상
	산업체 경력 30년 이상	산업체 경력 25년 이상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	산업체 경력 15년 이상

참고1

신기술·신제품 인증 개요 및 현황

□ 신기술인증 개요 및 현황

○ 개요

-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 인증대상(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 ①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②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③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분야별 현황

연도	합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합계	766	164	52	315	7	125	103
2011년	107	22	5	51	1	14	14
2012년	157	40	11	60	2	28	16
2013년	103	26	7	43	3	14	10
2014년	111	23	5	46	0	22	15
2015년	72	12	8	29	0	16	7
2016년	79	16	5	30	1	11	16
2017년	83	14	8	33	0	13	15
2018년	54	11	3	23	0	7	10

□ 신제품인증 개요 및 현황

○ 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기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

- ①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②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③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등

○ 인증현황

- 2018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1,338개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참고2**민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8개 분야**

연번	분야	설명
1	스마트 제조 (Smart factory, Robot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제조
2	사물인터넷 (IOT)	사물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
3	빅데이터 (Big data, AI 등)	빅데이터 수집·저장 및 처리, 플랫폼 개발·분석 등
4	정보보안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보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설계, 인증, 관리, 구축, 통제 등
5	바이오 (Bio-Chemical Innovation)	바이오기능성 제품제조 등 바이오 분야 첨단 산업
6	핀테크 (Finance & Technology)	IT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로 금융 데이터분석과 소프트웨어 분야
7	무인이동체 (Unmanned aerial Vehicle)	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 및 통신장비 등의 시스템 관련
8	실감형 콘텐츠 (AR, VR)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사람의 제스처, 모션 등 사람의 행위를 인식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의 물체처럼 조작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콘텐츠